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186

2025년 12월 23일
보건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안일자 및 제안자** : 2025년 10월 20일 이종환 의원 외 30인

2. **회부일자** : 2025년 10월 23일

3. **상정일자** :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5년 12월 18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이종환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“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” 따라,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,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.1%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도록 확대됨(이전 1%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.1%)에 따라,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100분 1 이상에서 100분의 1.1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” [시행 2024. 8. 7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140호, 2024. 7. 17., 일부개정.]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개정안의 취지

○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이 개정(‘24.2.6.개정, 8.7. 시행) 되면서,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목표액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제시할 의무를 가지게 됨.

○ 본 개정안은 해당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(제2024-140호, 2024. 7. 17., 일부개정)된 우선구매 목표비율(1.1%)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음.

〈표〉 관련 신·구조문대비표[1)]

현 행	개 정 안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<신 설>	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(구매목표 비율)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.1로 한다.

1)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140호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」
부칙 제2조(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)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**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**한다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

○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(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)」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,

○ 동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.

○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’를 시행하고 있음. 이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, 용역 등 서비스를 공공기관[2]이 연간 총 구매액의 1.1%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함.

○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, 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음.

---

2)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,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방의료원, 기타특별법인을 의미함.

○ ‘24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814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있으며, 생산품의 종류는 약 200여개로 나타나고 있음.

○ 또한,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‘25년 4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발표하였고, 이에 따르면 ‘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,460억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‘25년 우선구매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,686억 원 증가한 9,582억원, 우선구매 비율 1.35%임.

- 동 계획을 통해 발표된 서울시의 ‘2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은 98억 5천9백만원으로 전체 구매금액의 0.95%이며 17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.

나.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(1) 구매목표비율 상향 (안 제6조제3항)

○ 동 조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.1로 상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.

〈표〉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 략)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,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	제6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제2조에 따라 100분의 1.1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○ 현행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, 구매목표의 제품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.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

○ 또한, 행정규칙인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1024-140호)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.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제7조 및 이에 근거하여 고시된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제2조의 구매목표 비율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,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이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1%에서 1.1%로 상향됨에 따라,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의의가 있음.

(2) 수의계약 근거규정 수정 (안 제5조제3항)

○ 또한, 동 조례개정안은 ‘24년 2월 개정된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상위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.

- ‘24년 2월 시행된 개정법률안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종전의 제4항이 제5항으로 수정됨.
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

〈표〉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우선구매 대상물품) ①・② (생 략) 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	제5조(우선구매 대상물품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법 제7조제5항----------.

다. 집행부서 의견 : 원안동의

○ 집행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상위법 개정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.

3 종합의견

○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및 관련 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확

보하려는 것으로, 단순한 구매 비율의 수치 상향에 그치지 않고, 해당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의 성격임.

○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재확인하고,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인식개선,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현재 고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100분의 1.1로 되어 있으며, 이를 반영한 것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비율도 채우지 못하고 있음.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함.

Ⅴ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186

발 의 년 월 일 : 2025년 10월 20일
발 의 자 : 이종환,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서상열, 심미경, 오금란, 유만희, 유정희, 윤기섭, 윤종복, 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 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“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” 따라,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,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.1%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도록 확대됨(이전 1%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.1%)에 따라,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100분 1 이상에서 100분의 1.1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” [시행 2024. 8. 7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140호, 2024. 7. 17., 일부개정.]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법 제7조제4항”을 “법 제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제2조에 따라 100분의 1.1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우선구매 대상물품) ①·② (생 략) 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	제5조(우선구매 대상물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법 제7조제5항----------.
제6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 략)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,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	제6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제2조에 따라 100분의 1.1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[1]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같은 조례 제6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.1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각종자료 등 검토결과[2]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
☏ 02-2180-7953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---

1) **[상위법 위임규정]**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위임규정인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

2) **[구매목표비율 증가에 의한 재정소요 검토]**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물품의 경우 시장가격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나, 일부 품목은 시장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하기도 하므로 해당 규정의 영향으로 물품구매 예산 총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